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남국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24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. 10.

발 의 자 : 김남국 · 양정숙 · 강득구
양이원영 · 김승원 · 민형배
윤영덕 · 강민정 · 이성만
박성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재판소는 결정례를 통하여 미결수용자의 가족이 미결수용자와 접견하는 것 역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판시하였음.

헌법재판소가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강조한 만큼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라 처분되어야 하며, 인신에 대한 강제처분인 만큼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그 처분이 이루어져야 함.

현재 피의자의 비변호인 접견교통권 제한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제한과 달리 법원이나 판사의 관여 없이 검사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피의자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상당함. 이러한 문제는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준용규정을 수사실무

편의에 맞추어 해석하여 적용한 것으로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피의자의 점건교통권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, 법원의 결정으로 피고인과 피의자의 점건교통권이 제한되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점건·교통금지를 한 이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91조제2항 및 제201조의3 신설 등).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법원의 결정으로 피고인의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·교통이 금지되는 때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접견·교통금지를 한 이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0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1조의3(피의자의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·교통제한조치) 사법경찰관 및 검사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제91조를 준용하여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집행할 수 있다.

제209조 중 “제89조부터 제91조까지”를 “제89조부터 제90조까지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피의자의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·교통제한조치에 관한 적용례) 제91조, 제201조의3 및 제20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피의자가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·교통을 신청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1조(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 · 교통) (생 략)	제91조(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 · 교통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 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②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법 원의 결정으로 피고인의 변호 인 아닌 자와의 접견·교통이 금지되는 때에는 피고인과 피 고인의 변호인에게 접견·교통 금지를 한 이유와 기간을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201조의3(피의자의 변호인 아 닌 자와의 접견·교통제한조 치) 사법경찰관 및 검사는 구 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제34조 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 을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제91 조를 준용하여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집행할 수 있다.</u>
제209조(준용규정) 제70조제2항, 제71조, 제75조, 제81조제1항 본문·제3항, 제82조, 제83조,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, <u>제89조</u>	제209조(준용규정) ----- ----- ----- -----, <u>제89조</u>

<u>부터 제91조까지</u> , 제93조, 제101조제1항, 제102조제2항 본문 (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)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.	<u>부터 제90조까지</u> ,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	--